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98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 김준혁 • 이수진 • 민홍철

권칠승・이기헌・조 국

부승찬 • 박수현 • 모경종

강경숙 · 백승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이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스포츠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스포츠 경기에 대하

여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경범죄 처벌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은 온라인에서 이루 어지는 암표매매는 처벌할 수 없으며,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부정판매 전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금지규정과 제재규정,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유형을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

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1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제3호)로 세분화 함(안 제7조의 3 신설).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 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되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나 재판매가격이 이스포츠 경기마다 다르다는 점과 입장권등의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크기를 '정액'이 아닌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액'으로 규정하고, 제7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신설).
- 라. 제7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 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 마. 제7조의3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와 제7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 신설).

법률 제 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7조의4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3(입장권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 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2.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 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3.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 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제7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벌칙) 제7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벌칙) 제7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몰수 · 추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2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의3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 2. 제7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3(입장권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관
	<u>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u>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
	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
	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
	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
	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
	매를 방해하는 행위
	3.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신 설>

<신 설>

<신 설>

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7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7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제20조(벌칙) 제7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 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 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u> 처한다.</u>
<u><신 설></u>	제21조(몰수·추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재물은 몰수
	<u>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을 몰수
	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
	액(價額)을 추정한다.
<u><신 설></u>	제2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u>한다.</u>
	<u>1. 제7조의3제1호 및 제2호를</u>
	위반한 자
	2. 제7조의3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
	두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